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

- 금감원은 '09.4월 RBC(Risk Based Capital)제도 도입 이후 리스크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자기자본 산출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내부모형 제도는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며, 동제도 도입 시 금융회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함.
 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,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.
-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구축 시 회사 리스크의 성격, 범위, 복잡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리스크 측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,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 시 통계적 적정성, 산출기준 충족, 용도 적합성 및 내부통제 등의 세 가지 적정성 테스트를 보험회사에 요구하여야 함.
- 내부모형 사용 시 승인절차는 사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, 승인 이후에도 주기적인 적정성 검증 및 주요 변화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.
 - 승인가준을 충족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,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현행방식으로 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함.
- 본 제도는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,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·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(∼'09년)하고 시장·신용리스크는 2단계('10년∼)로 추진할 계획임.
-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양질의 리스크관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유인하고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험기준 자기자본 산출에 따른 자본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.

(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추진,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 보험팀, 7/21)